

 루리 위키 >  가이드 · 고민 해결

홈 > 고민 해결

루리의 줍줍 · 응모·실무 가이드

욕실·인테리어 공사비 부가세, 세금계산서·현금...

루리의 줍줍이 정리한 글



욕실·인테리어 공사비 부가세, 세금계산서·현금영수증 정리

루리

인테리어 업체가 일반 과세 사업자라면 공사비에는 부가세 10%가 붙는 것이 원칙이고, 업종 특성상 현금으로 낼 때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어요. 개인 집 공사는 증빙을 받아 두는 것이 하자 보수나 분쟁 때 가장 든든해요.

인테리어 업체가 일반 과세 사업자라면 공사비에는 부가세 10%가 붙는 것이 원칙이고, 업종 특성상 현금으로 낼 때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어요. 개인 집 공사는 증빙을 받아 두는 것이 하자 보수나 분쟁 때 가장 든든해요.

국세청 현금영수증 안내와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을 정리한 일반 설명이에요. 사업자 유형별 세부 판단은 **공식 확인**이 필요해요. 예시는 설명용 **가상 예시**예요.

1 1. 기본 정보

항목	내용
부가세율	10%(부가가치세법 제30조 (https://www.law.go.kr/ 법령/부가가치세법/제30조))
세금계산서	과세 공급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 (제32조)
의무발행업종	「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」 포함(도배업만 하는 경우 제외)
현금영수증 의무 기준	건당 거래금액(부가세 포함) 10만 원 이상
미발급 가산세	미발급 금액의 20%(사업자에게 부과)
간이과세자 등 세부	업체 유형별로 다르니 공식 확인

2 2. 견적서 받을 때 순서

- 견적서에 「부가세 포함」인지 「별도」인지 적게 해요.
- 업체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과세 유형을 물어봐요.
- 결제 수단(카드·계좌이체·현금)을 정하고, 증빙 종류를 계약서에 적어요.
- 계약금·중도금·잔금마다 증빙이 나오는지 확인해요.
- 공사가 끝나면 영수증과 계약서를 함께 보관해요.

3 3. 현금영수증을 받는 방법

-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을 받으면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해요.
-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모르면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 코드로 자진 발급하게 돼 있어요.
- 소득공제용으로 받을지, 지출증빙용으로 받을지 결제할 때 말해 주세요.
- 미발급 신고 방법과 기한은 국세청·정부24 안내에서 **공식 확인**하세요.

4 4. 흔한 실수

- 「현금이면 부가세 빼 준다」는 말만 믿고 증빙 없이 결제하는 경우가 있어요. 나중에 하자 보수나 분쟁 때 거래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요.
- 견적서에 부가세 포함 여부를 안 적어서 잔금 때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.
- 계약금만 이체하고 증빙을 안 받는 경우가 있어요.
- 개인 거주용 공사 비용은 부가세를 돌려받는 구조가 아니에요. 사업용 건물이라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**공식 확인**하세요.

5 5. 가상 예시

F씨가 욕실 공사 견적으로 공급가액 300만 원에 부가세 별도를 받았다고 가정해요. 부가세 10%는 30만 원이라 총 330만 원이에요. 현금으로 내면 건당 10만 원 이상이라 업체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구조예요. 이 숫자는 설명용이에요.

6 체크리스트

- 견적서에 부가세 포함·별도가 적혀 있다
- 업체 사업자등록과 과세 유형을 확인했다
- 결제 수단별 증빙을 계약서에 적었다
- 10만 원 이상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받았다
- 계약서와 영수증을 함께 보관한다

7 용어 정리

- **공급가액**: 부가세를 뺀 순수 공사비예요.
- **세금계산서**: 사업자 사이에 부가세를 증명하는 서류예요.
- **현금영수증**: 현금 결제 내역을 국세청에 알리는 증빙이에요.
- **의무발행업종**: 소비자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업종이에요.

8 자주 묻는 질문

Q.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을 둘 다 받아야 하나요?

A. 상황별로 달라요. 같은 거래에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국세상담센터 126에 **공식 확인**하세요.

Q. 도배만 하면요?

A. 국세청 목록에서 도배업만 하는 경우는 의무발행업종에서 제외된다고 안내돼요.

9 근거로 삼은 공식 출처

- 국세청 현금영수증발급의무: <https://www.nts.go.kr/nts/cm/cntnts/cntntsView.do?mi=2471&cntntsId=7796> (<https://www.nts.go.kr/nts/cm/cntnts/cntntsView.do?mi=2471&cntntsId=7796>)
- 국세청 현금영수증·신용카드 발급·수취시 혜택:
<https://www.nts.go.kr/nts/cm/cntnts/cntntsView.do?mi=2469&cntntsId=7794> (<https://www.nts.go.kr/nts/cm/cntnts/cntntsView.do?mi=2469&cntntsId=7794>)
-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(<https://www.law.go.kr/법령/부가가치세법/제32조>):
<https://www.law.go.kr/LSW/lsLawLinkInfo.do?lsJoLnkSeq=1001064233&chrClsCd=010202> (<https://www.law.go.kr/LSW/lsLawLinkInfo.do?lsJoLnkSeq=1001064233&chrClsCd=010202>)



공유

공유하기

카카오톡



링크 복사

네이버 블로그

밴드

X

Facebook

다른 고민 보기 · 루리에게 추천 상담 받기

10 마감 임박 공모전

출처: 루리의 줍줍(sungprofile.cloud) · 최신 내용은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